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9-34호
2019. 5. 24.(금)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차 례

고 시(3)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19-65호) ·····1
- 도시계획시설(새터·등마루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고시 제2019-70호) ·····2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고시 제2019-72호) ·····5

공 고(6)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사항처분사전통지 (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9-466호) ·····7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폐기 공고(공고 제2019-473호) ·····8
- 신대천 외 2개 소하천 지정(폐지·변경) 공람·공고(공고 제2019-479호) ····10
-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공고 제2019-481호) ·····13
- 명예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공고 제2019-482호) ···18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484호) ·····22

입법예고(2)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478호) ··3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등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483호) ·····42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 2019-65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변경전		변경후		비고
		평면직각종횡선좌표		평면직각종횡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919	327769.19	237865.18	327768.18	237867.72	재설치
도근점	〃	-	-	428075.76	237939.17	세계측지계 재관측
도근점	1508	316557.56	237879.37	316556.12	237888.43	재설치
도근점	〃	-	-	416863.36	237960.18	세계측지계 재관측
도근점	1509	316554.76	237795.43	316552.94	237745.50	재설치
도근점	〃	-	-	416860.17	237817.18	세계측지계 재관측
도근점	2523	327634.45	237866.48	327635.09	237866.91	재설치
도근점	〃	-	-	427942.74	237938.35	세계측지계 관측
	이	하		여	백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오정동
측량년월일	2019년 5월 10일
측량성과보관장소	대덕구청 민원지적과
비고	표지재질(철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70호

도시계획시설(새터·등마루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새터·등마루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년 5월 2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22-3번지 / 새터어린이공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2-1번지 / 등마루어린이공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새터·등마루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 사업의 명칭 :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새터, 등마루어린이공원)

다. 사업의 규모

· 공원총면적 : 3,568.5㎡

· 사업 면적

- 새터어린이공원 : 1,635.5㎡

- 등마루어린이공원 : 1,93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201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부조서

구,시	동,면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 계				3,568.5	3,568.5					
대덕	비래동	122-3	공원	1,635.5	1,635.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			
대덕	석봉동	202-1	공원	1,933	1,933					

사. 실시계획 조서

· 새터어린이공원

구분			공원조성계획 결정 (㎡)				(금회) 실시계획 작성 (㎡)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총계			1,654.0	100	81.8	93.6	1,654.0	100	81.8	93.6	
시설지역	계		898.1	54.30	81.8	93.6	898.1	54.30	81.8	93.6	
	도로및광장	소계	608.1	36.76	-	-	608.1	36.76	-	-	
		도로	28.9	1.75	-	-	28.9	1.75	-	-	
		광장	579.2	35.01	-	-	579.2	35.01	-	-	
	조경시설		-	-	-	-	-	-	-	-	
	휴양시설		81.8	4.95	81.8	93.6	81.8	4.95	81.8	93.6	
	유희시설		198.6	12.01	-	-	198.6	12.01	-	-	
	운동시설		9.6	0.58	-	-	9.6	0.58	-	-	
	편익시설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녹지			755.9	45.70	-	-	755.9	45.70	-	-	

· 등마루어린이공원

구분			공원조성계획 결정 (㎡)				(금회) 실시계획 작성 (㎡)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총계			**1,933.0**	**100**	**94.2**	**209.1**	**1,933.0**	**100**	**94.2**	**209.1**	
계			**1,120.1**	**56.36**	**94.2**	**209.1**	**1,120.1**	**56.36**	**94.2**	**209.1**	
시설지역	도로 및 광장	소계	268.6	9.95	-	-	268.6	9.95	-	-	
		도로	109.4	3.73	-	-	109.4	3.73	-	-	
		광장	159.2	6.22	-	-	159.2	6.22	-	-	
	휴양시설		284.6	11.06	-	-	284.6	11.06	-	-	
	유희시설		213.6	14.22	94.2	209.1	213.6	14.22	94.2	209.1	
	운동시설		82.6	15.12	-	-	82.6	15.12	-	-	
	편익시설		255.5	5.82	-	-	255.5	5.82	-	-	
	관리시설		15.2	0.19	-	-	15.2	0.19	-	-	
녹지			-	-	-	-	-	-	-	-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72호

『대전 대덕구 오정동 442-8, 9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대전 대덕구 오정동 442-8, 9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 대덕구 오정동 442-8, 9번지
   나. 면 적 : 450.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전 대덕구 오정동 442-8, 9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대 표 김 영 기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223, 3동 1407호(둔산동, 청솔아파트)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5일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9. 05. 24.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높 이 (층 수)	용 도	세대수 /주차대수	비고
450.8㎡	193.24㎡ / 42.87%	758.81㎡ / 168.33%	최고 15.65m (지상5층)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12세대 / 8대	1층(1개)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98.85㎡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 세대수				근린생활시설	비고
	소 계	51.59㎡	30.00㎡	48.21㎡	98.85㎡	
계	12	6	4	2	1	
일반분양	-	-	-	-	-	
토지등소유자	-	-	-	-	-	
임대	12	6	4	2	1	

8.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466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사항처분사전통지 (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9. 6. 3.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공시송달 내역

업종	업소명	업소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폐업일자)	처분내용	비고
집단급식소	C.H산업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19(읍내동)	박성규	사업자등록폐업 (2007.08.31.)	영업신고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9. 5. 17.~ 6. 3. (18일간)
6. 청문일시 : 2019. 6. 3.(월) 10:0 ~ 18:00
7. 청문장소 : 대덕구청 위생과(별관 2층)
8. 고지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 규정에 따라 2019.6.3.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대덕구청 위생과 ☎(042)608-6902.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19-473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폐기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폐기일자 : 2019. 5. 24.(금)
2.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폐기내역 : 4개(등록 3개 / 폐기 1개)

연번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변경일자	사 유
1	공인등록	덕 암 동 장 인 (인 증 기 용)	훈민정음체 / 2.1cm 정방형		2019.5.24.	인증기 신규 구입
2	공인등록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인 덕 암 동 민 원 용 (인 증 기 용)	훈민정음체 / 3.0cm 정방형		2019.5.24.	인증기 신규 구입

연번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변경일자	사 유
3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인 오정동민원용 (무인발급기용)	훈민정음체 / 3.0cm 정방형		2019.5.24.	가족관계등록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4	공인폐기	덕암동장인 (인증기용)	훈민정음체 / 2.1cm 정방형		2019.5.24.	인증기 폐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479호

신대천 외2개 소하천 지정(폐지·변경) 공람·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원의 소하천(산디천 외 2개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법 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규정에 의거 소하천 지정(폐지·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 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규정에 의거 소하천 지정(폐지·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산디천 외 2개 소하천 지정(폐지·변경)

나.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다.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신대동, 장동, 미호동 일원

라. 사업위치 및 규모

소하천명	하천구간		유역면적(㎢)	유로연장(km)			지정(폐지·변경) 사유
	시점	종점		기고시	변경	증감	
산디천	대덕구 장동 545	대덕구 장동 426	6.760	3.300	-	▼3.300	용호천(지방하천)과 중복되어 있어 잔여구간 연장이 500m 이하로 소하천 폐지
미호천	대덕구 미호동 492	대덕구 미호동 472	0.639	1.150	-	▼1.150	소하천 대부분 대청호 비상여수로에 포함되어 잔여구간 연장 500m 이하 및 비상여수로 직하류 구간 국토부 관리로 소하천 폐지
신대천	대덕구 연축동 65	대덕구 신대동 274-1	3.330	2.100	1.421	▼0.679	상류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시점부 변경

마. 의견청취 사항의 주요내용

- 산디천 외 2개 소하천 지정(폐지·변경)

2.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9년 5월 24일 ~ 2019년 6월 18일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및 정보통신망

구분	장소 및 정보통신망 홈페이지 주소
공람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대덕구청 별관 3층)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www.daedeok.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19. 6. 11(화) 10시 30분 / 회덕동 행정복지센터
- 2019. 6. 11(화) 14시 00분 / 미호동 정다운 마을쉼터(미호동 262-4)

나. 주요내용: 주민의견청취

4. 공람내용 : 산디천 외 2개 소하천 지정(폐지·변경)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이 시작된 날로부터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대덕구청 홈페이지는 제외)

다. 제출내용 : 산디천 외 2개 소하천 지정(폐지·변경)에 관한 의견

라.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 작성하여 제출

6. 기타문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042-608-5223)

7.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신대천 외 1개소 소하천정비조합계획 재수립 [신대천 외 2개 소하천 지정(폐지·변경)]	
사업장 위치	대덕구 관내 소하천 2개소(산디천, 미호천) 폐지, 1개소(신대천) 변경	
사업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대천 외 1개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신대천 외 2개 소하천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의견		
비고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481호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19. 5. 24. ~ 2019. 6. 7. (14일 이상)
2. 공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우리 구 관내 도로의 **예비도로명** 의견수렴
4. 의견제출

예비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6. 7.(금)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방 법 : 우편, 방문, 팩스 등에 의견서 제출

나. 제출하는 곳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지적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우편번호 : 34443)

○ 문의전화 : ☎ 042-608-5307 (FAX : 042-608-3825)

3. 도로명 부여 절차

주민의견 수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고시 (예비도로명과 같게 도로명 결정시) / 공고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도로명 결정시)
14일이상	30일 이내		10일 이내	

붙임 1.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의견서 1부.

2. 도로명 도로구간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첨부	의견서

예비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성명		전화	
	주소			
제출의견	찬 반 여 부			
	사 유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도로구간 조서 및 현황도

1 도로명 : 상서로

조서	도로명	도로위계	관할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km)	폭 (m)		시작	끝		
	상서로	로	대덕구	상서동 389-33	상서동 137-2	9	24	20	1	90	행정구역명(상서동)을 반영	
현황도											

2 도로명 : 신탄진로349번길

조서	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km)	폭 (m)		시작	끝		
	신탄진로349번길	길	대덕구	와동 325-1	와동 321-39	4	6	20	1	42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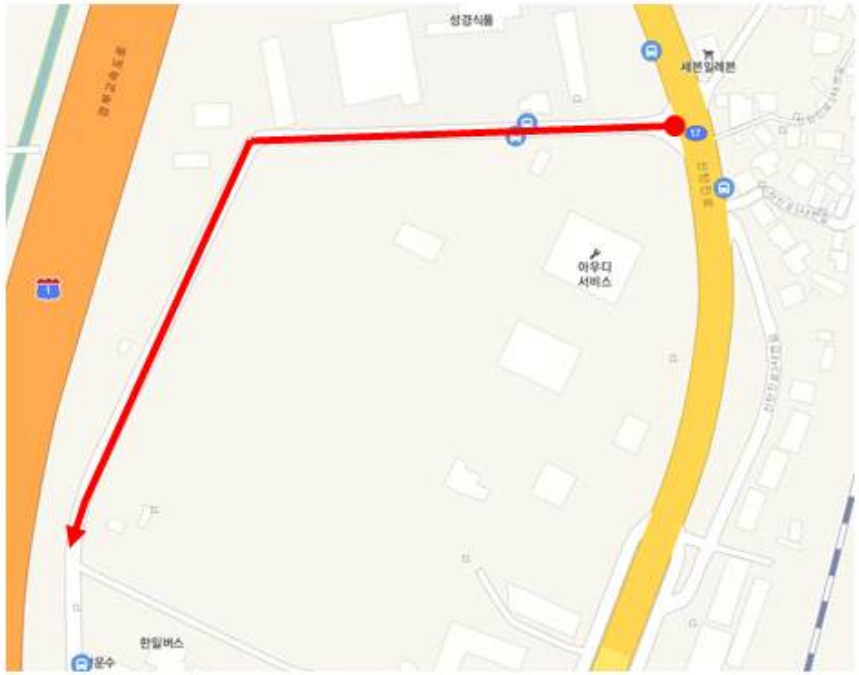											

3 도로명 : 대덕대로1585번길

조서	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km)	폭 (m)		시작	끝		
	대덕대로1585번길	길	대덕구	석봉동 778	석봉동 522-4	5	20	20	1	52	대덕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8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현황도												

명예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도로명의 부여 절차)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 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19. 5. 24. ~ 2019. 6. 7. (14일 이상)
2. 공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명예도로명	명예도로구간		도로명부여 사유	사 용 기 간
	시 점	종 점		
금형산업로	신탄진동 712-1	신탄진동 222	도시개발산업 평촌지구 내 금형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기원하기 위함	3년

4. 의견제출

명예 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6. 7.(금)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방 법 : 우편, 방문, 팩스 등에 의견서 제출

나. 제출하는 곳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지적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우편번호 : 34443)

○ 문의전화 : ☎ 042-608-5307 (FAX : 042-608-3825)

5. 명예도로명 부여 절차

주민의견 수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고시
14일이상	30일 이내		10일 이내	(예비도로명과 같게 도로명 결정시)
				공고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도로명 결정시)

붙임 1.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의견서 1부.

2. 명예도로명 도로구간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첨부	의견서

명예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성명		전화	
	주소			
제출의견	찬 반 여 부			
	사 유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도로구간 조서 및 현황도

조서	명예도로명	도로구간			사용기간	부여 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m)			
	금형산업로	신탄진동 712-1	신탄진동 222	245	3년 (2019. 6. 21. ~ 2022. 6. 20.)	도시개발산업 평촌지구 내 금형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기원하기 위함	
현황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484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일시점용 (㎡)	영구점용 (㎡)	굴착기간
합계		노후 하수 관로 보수	9개소			627.0	1,587.5	106.3	
1	신탄진로 197일원	노후 하수 관로 보수	신탄진로 197일원	600	소형고압블럭	20.0	50.0	5.7	'19.5. ~ '19.10. (착공일로부터 150일)
				600	아스콘	10.0	25.0	2.8	
2	중리로54 번길33일원	노후 하수 관로 보수	중리로54 번길33일원	400	아스콘	30.0	75.0	3.8	
3	중리로53 번길14-1 일원	노후 하수 관로 보수	중리로53번길 14-1일원	600	아스콘	60.0	150.0	17.0	
4	중리로63 번길14-9 일원	노후 하수 관로 보수	중리로63 번길14-9 일원	450	아스콘	50.0	125.0	8.0	
5	중리로21 번길11일원	노후 하수 관로 보수	중리로21 번길11일원	450	아스콘	135.0	337.5	21.5	
6	중리로21 번길33일원	노후 하수 관로 보수	중리로21 번길33일원	450	아스콘	135.0	337.5	21.5	
7	중리북로31 번길74일원	노후 하수 관로 보수	중리북로31 번길74일원	450	아스콘	75.0	187.5	11.9	
8	중리서로 18일원	노후 하수 관로 보수	중리서로 18 일원	450	아스콘	33.0	82.5	5.2	
9	덕암로188 번길38일원	노후 하수 관로 보수	덕암로188 번길38일원	300 ~450	아스콘	79.0	217.5	8.9	

2019년 5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사 진 대 지

굴착위치	신탄진로 197 일원	심의1번

위 치 도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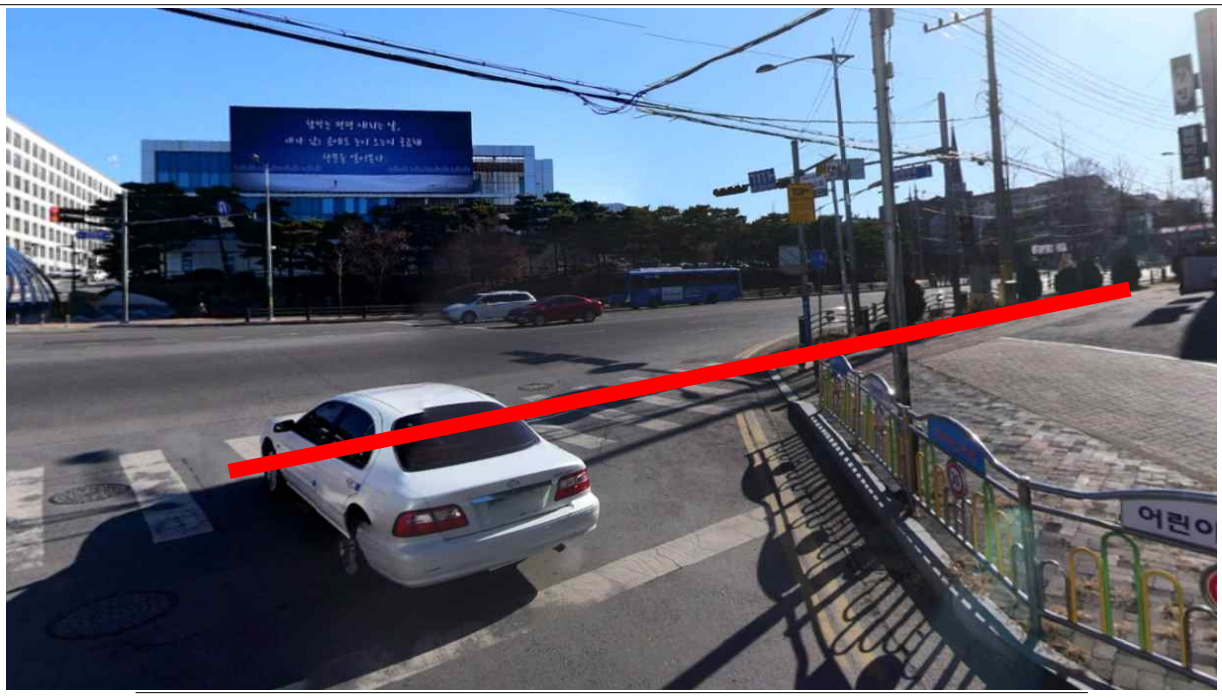

사 진 대 지

굴착위치	중리로 54번길 33일원	심의2번

위 치 도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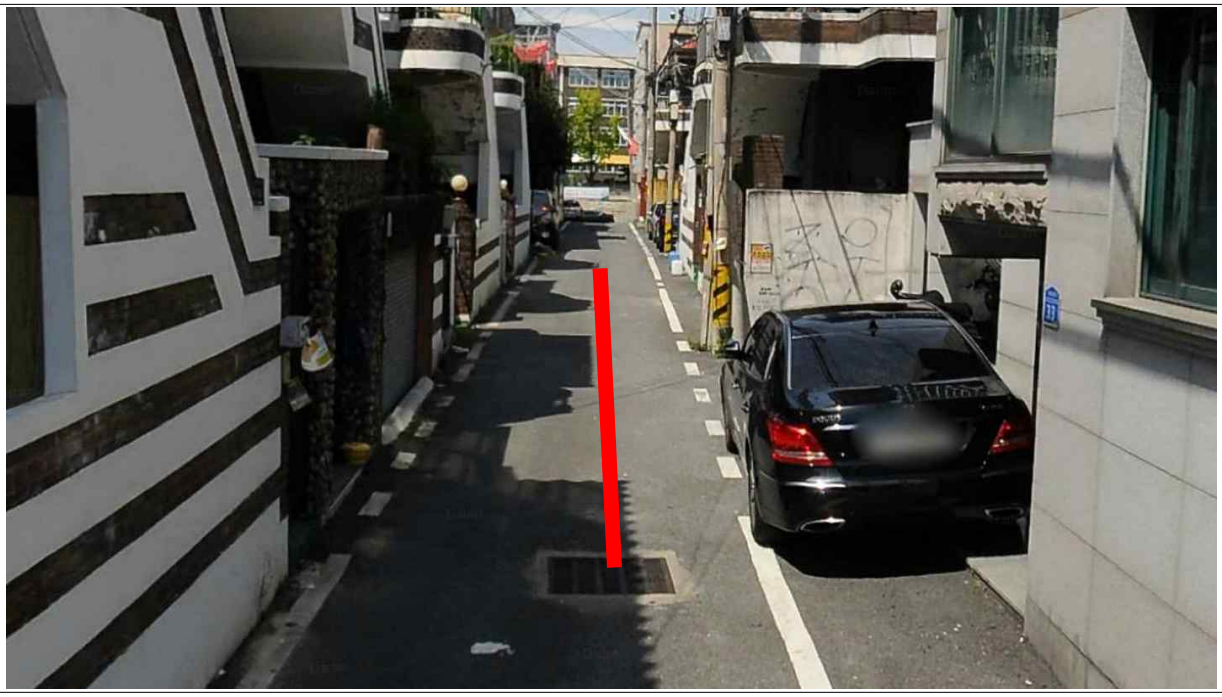

사 진 대 지

굴착위치	중리로 53번길 14-1 일원	심의3번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사 진 대 지

굴착위치	중리로63번길 14-9 일원	심의4번

위 치 도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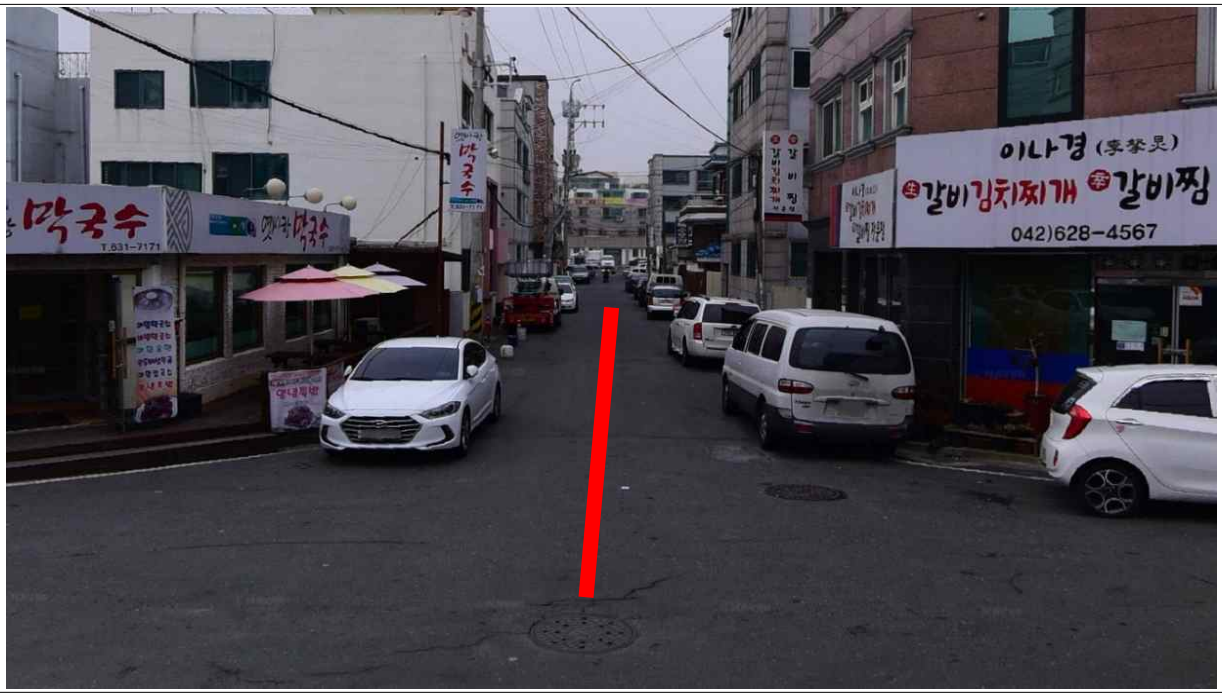

사 진 대 지

굴착위치	중리로21번길 11 일원	심의5번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사 진 대 지

굴착위치	중리로21번길 33 일원	심의6번

위 치 도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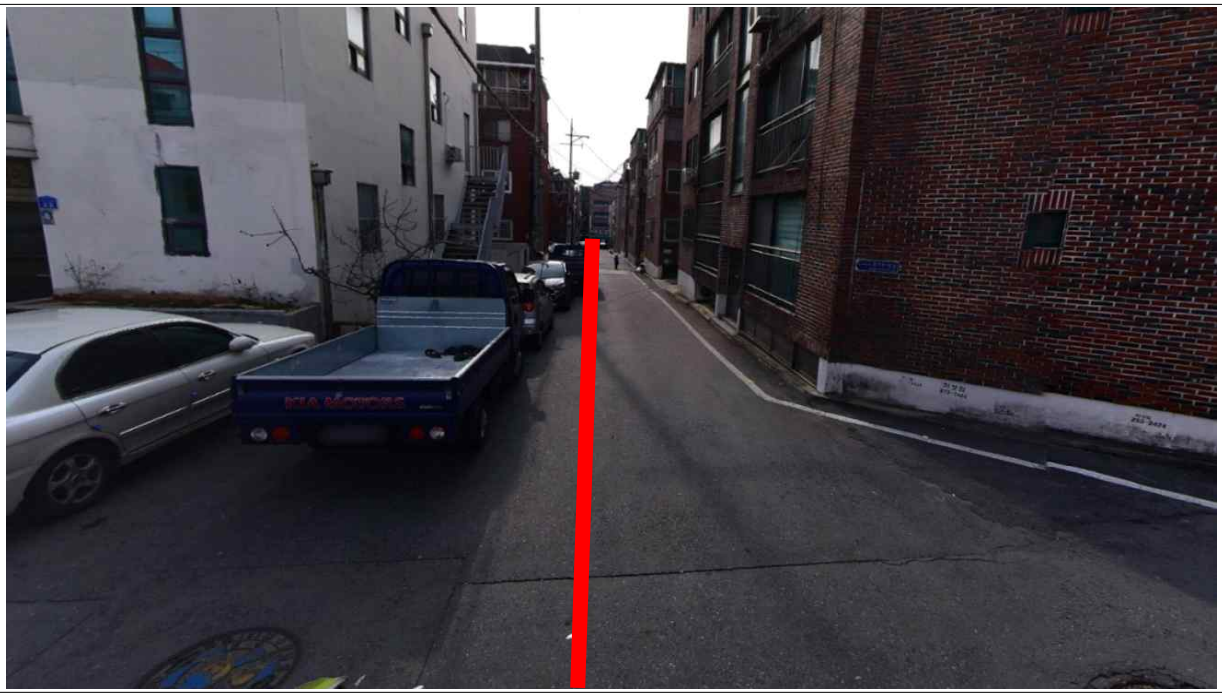

사 진 대 지

굴착위치	중리북로31번길 74 일원	심의7번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사 진 대 지

굴착위치	중리서로 18 일원	심의8번

위 치 도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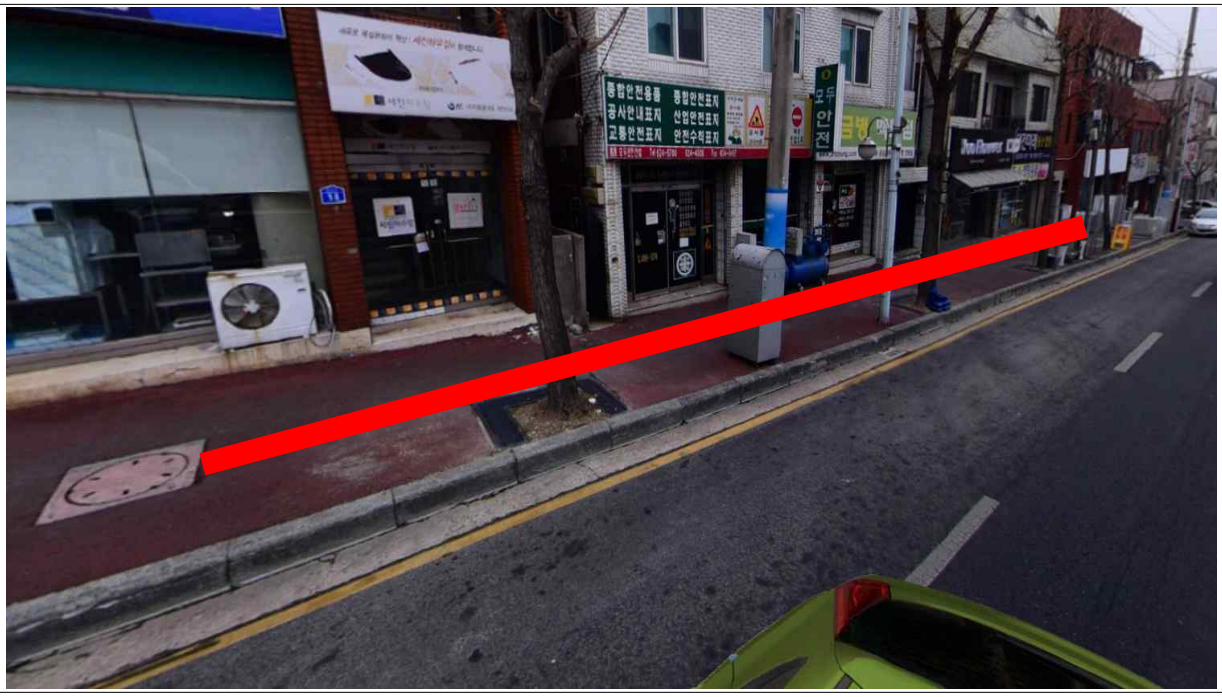

사 진 대 지

굴착위치	덕암로 188번길 38 일원	심의9번

위 치 도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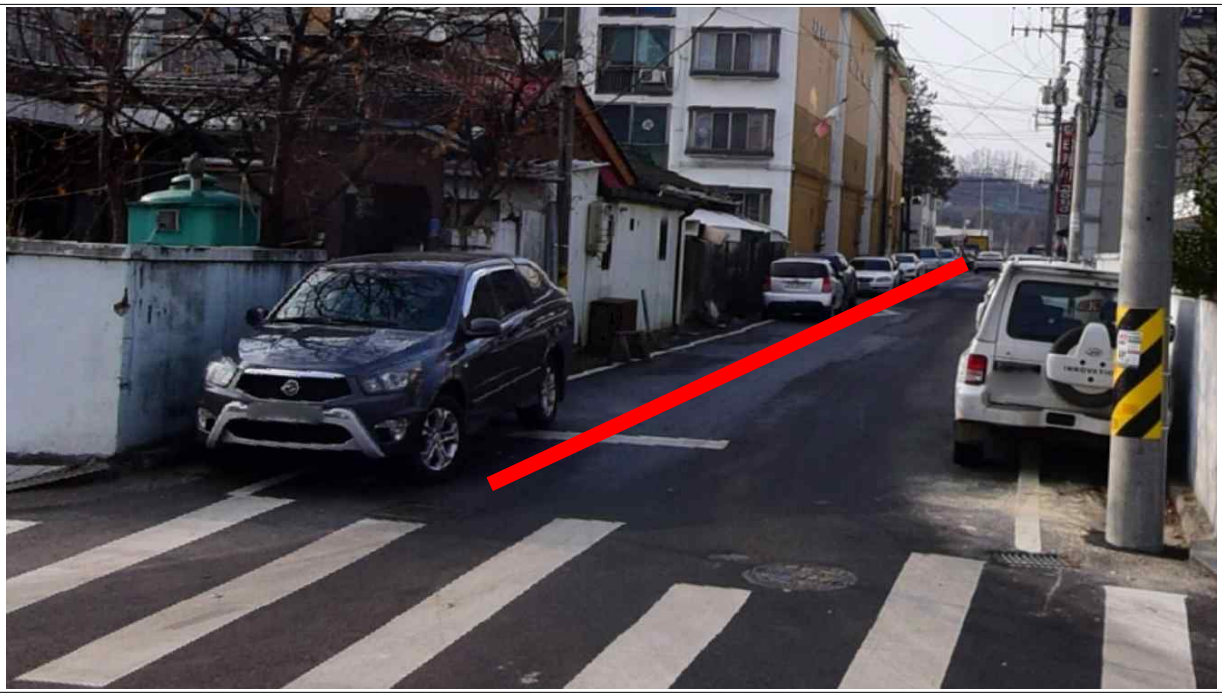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 - 47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신설된 주민자치회에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원봉사 통장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용어 및 맞춤법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심의 권한을 조정함(안 제4조).

기존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되고 주민자치회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심의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함.

나. 자원봉사 통장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3항).

통장 위촉 기준의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자원봉사 통장에게는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교육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전화: 042-608-6514, FAX: 042-608-3822, E-mail: jjm594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담당자(전화: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동행정”을 “동 행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을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반”을 “통·반”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관할구역의 세대주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며, 관할구역의 세대주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불참하는등”을 “불참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과반수 이상이”를 “과반수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로 한다.

제13조 중 “무료열람 및 사용등”을 “무료열람 및 사용 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월정 수당을지급하고”를 “월정수당을 지급하고”로, “동소속 공무원”을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효율적인 달성과 동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2조(하부조직) ---------- 동 행정----------.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통장·반장의 위·해촉) ① (생 략) ② 통장·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또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관할 구역의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통장·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동장이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관할구역의 세대주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2. 반장은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하며, 관할구역의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며, 관할구역의 세대주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3월 이상 통장·반장회의에 불참하는등 불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4. ---------- 불참하는 등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관할구역의 세대주 과반수 이상이 해촉을 요구한 경우	6. ---------- 과반수가 ----------
제12조(비밀유지) ① (생 략)	제12조(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편의제공) 통장·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편의제공) ----------무료열람 및 사용 등 ----------.
제14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실비변상) ① ----------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 동 소속 공무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원봉사 통장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삭 제)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략)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공동체과	
담 당 자 연 락 처	조 정 만 042-608-6514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48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등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인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센터 운영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마. 수리업체 협약의 해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과

(전화 : 042-608-6381, FAX : 042-608-3833, E-mail : youyuk@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과 담당자 윤여경 (전화 : 042-608-63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을 수리센터로 지정 또는 수리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 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제3조에 의한 수리센터로 지정 또는 수리센터 운영업무를 위탁 받을 수 없다.

③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의 안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고장 등 수리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조문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비용추계의 전제 : 계속사업(매년시행)

○ 대덕구 장애인 보장구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 대상자	합계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계	1,174	430	123	621
기초수급자	501	194	66	241
차상위 및 일반장애인	673	236	57	380

- 대덕구 장애인 보장구 보급 건수가 1,000여대 이상으로 매년 고장 등으로 수리가 예상되는 전동보장구가 10% 이상 발생이 예상되므로 최소 매년 100건, 1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4. 비용추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입	소계(a)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국비보조금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지 방 세	0	0	0	0		0
	세 외 수 입	0	0	0	0		0
	기타(구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세출	소계(b)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세입 : 구비 75,000천원

○ 세출 : 1년차 ~ 5년차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75,000천원

- 수급자 및 차상위 : 50명 × 200천원 × 5년 = 50,000천원

- 일반 장애인 : 50명 × 100천원 × 5년 = 25,000천원

6.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국비보조금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자체수입(구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7.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8.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작 성 자 : 사회복지과장 허규상

[관 계 법 령]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등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